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정 또는 인정 의무화 >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426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지영 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9.
3. 회부연월일 : 2025. 12.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교과용 도서 외에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 기반 학습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사실상 교과 학습을 보조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품질심사나 관리 절차가 없어 학교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편차가 발생하고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또한 교과용 도서와 같이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자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내용의 공신력과 학습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와 같이 교육 자료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도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¹⁾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이 법에서 “교육 자료”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u>소프트웨어</u> 3.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u>소프트웨어로서</u> <u>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u>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그 밖에 교육 자료의 검정·인정·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나. 검토의견

- 현행 「초·중등교육법」 체계에서는 수업에 사용되는 자료를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로 구분하고 있음.
- 현행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는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교과 수업을 위하여 학생에게 기본적으로 제공·사용하도록 정해진 도서로서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학교는 원칙적으로 해당 교과용 도서를 사용함. 이에 따라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으로서 국가에서 직접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이에 반해 현행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육 자료는 교과 수업이나 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과용 도서를 보완·확장·보조하는 모든 형태의 자료로서 교사의 자율적 판단으로 선택·활용되며, 교육과정과의 직접적 ‘필수 연계성’은 없어서 검정·인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따라서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더라도 교사·학교에 따라 교육자료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 비교]

구 분	교과용 도서	교육 자료
교육과정과의 연계	직접적·필수적	보완적·선택적
사용의무	원칙적으로 사용	교사 재량
승인절차	국정·검정·인정 필수	절차 없음
예산지원	국가·지자체 무상 제공	학교·교사·사업별 상이
수정·개발	제한적	자유로움

□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 기반 학습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²⁾ 이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교과 학습을 보조하는 핵심 자료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³⁾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업 자료로서 현행법 체계상 교육 자료에 해당하여 전통적인 ‘교과서’처럼 표준화된 품질 관리·검정 없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면서 현장에서의 도입 및 활용에 있어 격차가 발생하고 그 신뢰성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와 같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자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내용의 공신력과 학습 효과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음.

2) 예컨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23년부터 AI 기반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하이러닝을 통해 일선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교육 콘텐츠 80만여개와 EBS 교육 콘텐츠 7만여개를 과목 및 학생 특성에 맞춰 활용하고 있음.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개정안을 통해 향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국가가 관리하여 학교별 편차를 줄이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행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이 지적하는 품질 문제나 신뢰도 저하 문제는 일정 부분 관리가 가능한 측면이 있음.⁴⁾

또한, 국가 등의 검·인정을 받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만 교육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교과용 도서 외 교사들이 수업에서 유연하게 사용 중인 다양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교과용 도서의 검정 절차와 심사 일정(약 1년 소요)을 고려할 때,⁵⁾ 기술진보에 따라 빠르게 개발되는 에듀테크(EduTech)⁶⁾들을 적시에 활용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음.

4)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교육 자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참고 1. 교과용 도서 검정 절차 및 일정> 참조

6) 에듀테크(EduTech)는 교육을 뜻하는 ‘Education’과 기술을 뜻하는 ‘Technology’가 합쳐진 말임.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교육 자료는 교사가 교과용 도서 외에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적 자료로서, 교과용 도서와 달리 교사가 교수학습 상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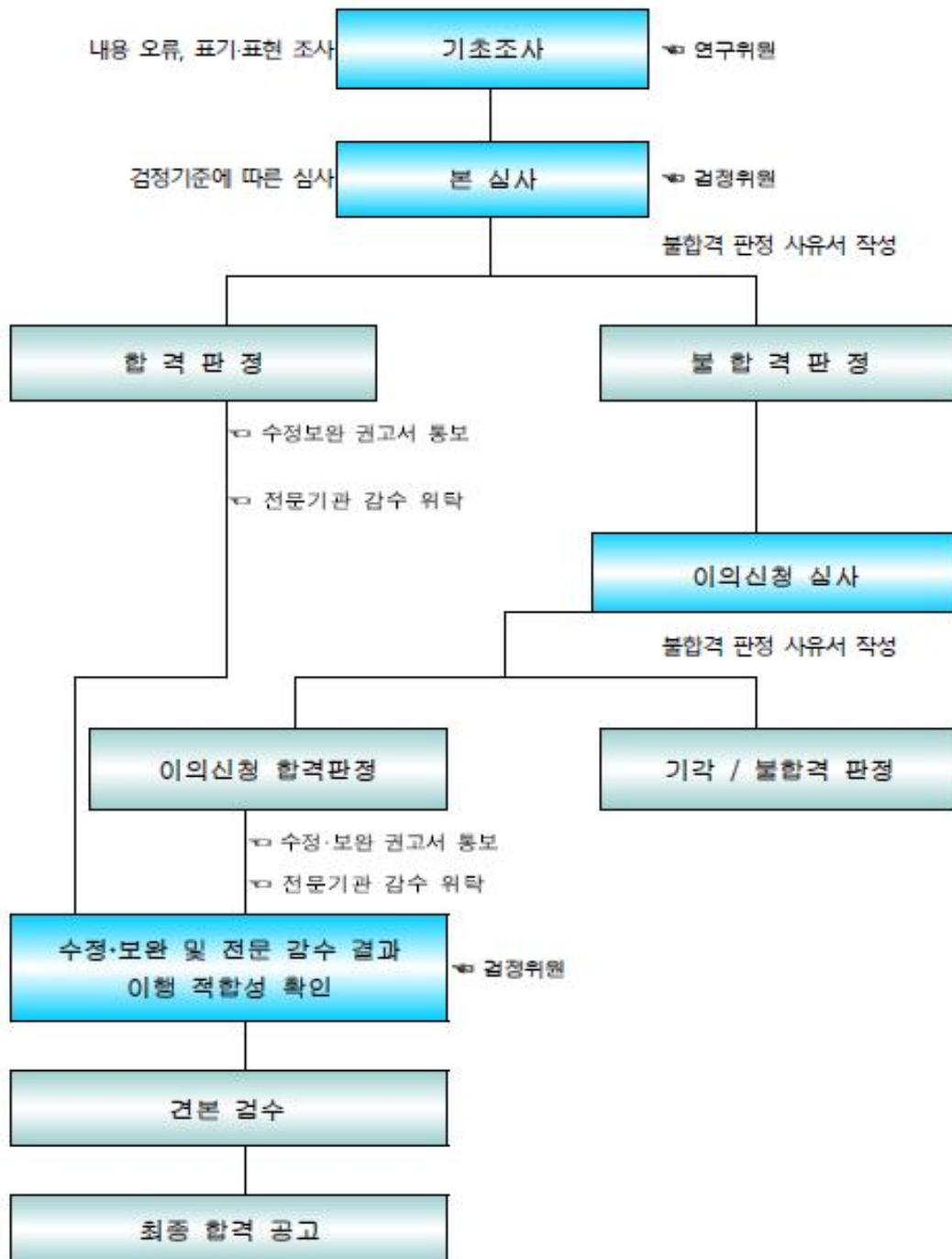
충남교육청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수업 여건에 따라 신속한 적용·변경이 필요하므로 검정·인정 의무화는 수업 자율성과 현장 활용 제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며,

대구교육청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국가가 관리하여 학교별 편차를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에서 의도한 기술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며 학교의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88

참고 1 교과용 도서 검정 절차 및 일정

1. 교과용 도서 검정 절차



2. 검정 심사 일정(예시)

구 분		일 정	비 고
검정 실시 변경 공고		2025년 8월 29일(금)	홈페이지 공고
온라인 접수		2025년 12월 8일(월) ~ 2025년 12월 9일(화) (2일간)	창의재단 검정시스템 홈페이지 접수
오프라인 접수		2025년 12월 15일(월) ~ 2025년 12월 16일(화) (2일간)	방문 접수
기초조사		2025년 12월 ~ 2026년 1월	
본 심사	심사	2026년 1월	
	심사 결과 발표	2026년 2월 3일(화)	홈페이지 공고
이의신청 심사		2026년 4월	별도 수수료 부과
수정본 및 서류 접수 (온라인 및 오프라인)		2026년 5월 18일(월) ~ 2026년 5월 19일(화) (2일간)	
수정본 검토	검토	2026년 5월	
	검토 결과 발표	2026년 6월 2일(화)	홈페이지 공고
견본 및 서류 접수 (온라인 및 오프라인)		2026년 7월 28일(화) ~ 2026년 7월 29일(수) (2일간)	
견본 검수	검수	2026년 8월	
	검수 결과 통보	2026년 8월 7일(금)	홈페이지 공고
최종 합격 공고		2026년 8월 28일(금)	대한민국 관보 공고

주. 해당 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과학 교과용도서 관련 일정임.

자료.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6년 수학·과학 교과용도서 검정 신청 설명회」, 2025. 10. 17.